

# 4. 土地의 形質變更 等 行爲許可基準等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169號, 1993. 10. 8

## 1. 개정사유

그동안 규제위주로 운영하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제도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민편의에 맞게 보완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녹지지역안의 분할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최소대지면적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시·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나.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신청시 경미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대신에 개략설계서로 가름함.
- 다.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·하수도 설치가 필요없는 창고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·하수도의 설치의무를

면제하고, 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도등도 상수도로 인정함.

- 라.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의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사용검사로 가름함.
- 마.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의 경우 허가없이도 형질변경 할 수도 있도록함.
- 바.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장소의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을 허용함.
- 사. 기존 토지면적이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분할을 허용함.

## 3. 의견제출

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

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28일까지  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  
관(참조: 도시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  
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  
반 여부와 그 사유 명시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
성명), 주소

**안버리는 등산길 주워오는 하산길**